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256

제출년월일: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의 위원회 관련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'인구변화대응위원회' 명칭을 '인구정책위원회'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·정책화 역할 강조하고자 함(안 제7조)
- 나.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7조)
- 다. 이민·다문화 분야 신설, 청년·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8조1항)
- 라.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8조3항제4호 및 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8. 22. ~ 9. 11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붙임
 - 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(☎ 2133-6642)

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)"를 "(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심의하기"를 "심의·자문하기"로, "인구변화대응위원회"를 "인구정책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"을 "기본계획 및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15명"을 "2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저출생·고령화,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,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제6항 중 "해당안건"을 "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"으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<u>(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)</u>	제7조 <u>(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)</u>
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<u>심의하기</u> 위해 서울	<u>심의·자문하기</u>
특별시 <u>인구변화대응위원회</u> (이하	<u>인구정책위원회</u>
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
	
1.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	1. <u>기본계획 및</u>
시행계획에 관한 사항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
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	
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	<u>20명</u>
성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	4. 저출생·고령화, 도시공간계획
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	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
<u>사람</u>	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<u><신 설></u>	5.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
	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,
	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
	다고 인정하는 사람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・②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- 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⑤ 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⑤ (생략)
 -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 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 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· 기피 · 회 피하여야 한다.

⑦・⑧ (생 략)

- (현행과 같음)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·운영에 관한 조례 | 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---.

(7)·(8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은 위원회 자문 기능 추가, 위원회 위원 수 확대, 위원 구성 다양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임보형 주무관(☎ 2133-6642)